

신혼부부 특별공급(당첨자 및 예비입주자) 서류제출 안내문

■ 서류제출 일정 : 특별공급 - 2023년 12월 07일(목) ~ 12월 09일(토) / 3일간 10:00 ~ 16:00

일반공급 - 2023년 12월 14일(목) ~ 12월 17일(일) / 4일간 10:00 ~ 16:00

■ 서류제출 장소 :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견본주택 (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9)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10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
※ 아래 서류 의 적격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부적격 의식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

구분	서류 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※ 2020.12.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[용도 : 아파트 계약용 /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] •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(서명 날인)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본인	•반드시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성명, 관계,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○			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	•반드시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성명, 관계,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 •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•공고일 이후 '공고일 현재 세대주'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(소득 및 자산 조회용)	본인 및 세대 구성원	•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(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) •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(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) •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원 (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) •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,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함
	○		주민등록표 초본 (전체 포함)	본인	•반드시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성명, 관계,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○			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	•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성명/관계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 •공고일 이후 '공고일 현재 세대주'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(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•(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)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•단독세대일 경우(주민등록표상 청약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, 이혼한 경우) 또는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)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	본인	•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10.(금)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•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	
○		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	배우자 및 세대원	•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	
○		전세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, 확인 가능 자료	임차주택	•임대차계약서 •낙찰 증명서류 : 매각허가결정(경매), 매각결정통지서(공매) / 경 : 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ex) 경매 : 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/ 공매 : 배분계산서 등 •등기사항전부증명서	
○		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 서류	대상자	•청약 시 최하중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(장애인등록증)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	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 및 (예비)배우자	•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•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및 (예비)배우자	•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는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	본인 및 (예비)배우자	•입양의 경우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및 (예비)배우자	•태아 또는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(견본주택 비치)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,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예비배우자	•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견본주택 비치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예비배우자	•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혼인 유무 확인)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주택공급신청자 및 (예비)배우자 •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(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) •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예비신혼부부 서약서	본인 및 (예비)배우자	•견본주택에 비치
	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위임장	본인
○	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 [용도 : 위임용/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] •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(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 명기)
○			대리인 신분증, 인감	대리인	•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	해당 주택	•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 철거명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•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오류 및 오타자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